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475
----------	-------

발의연월일 : 2026. 6. 24.

발 의 자 : 이성권 · 이현승 · 이인선
정성국 · 조승환 · 조은희
김 건 · 김용태 · 고동진
신성범 · 김재섭 · 이만희
박수영 · 한동훈 · 천하람
주호영 · 안철수 의원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투표용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위원이 개표소에 참석하게 하는 등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여, 투표용지를 일정 수량 준비하도록 의무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선거 사고 발생 시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하기 위하여 선거일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수량의 투표용지를 작성하도록 하고, 선거일에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도록 하

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고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중대한 선거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안 제12조제4항 신설 등).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원활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일에 당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51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 경우 투표용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수량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8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0조(선거사고 대응체계 구축 등)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중단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선거 관련 사고에 대비하여 선거사고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과 조치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 ③ 그 밖에 선거사고 대응체계의 구축·운영, 조치 사항 공표의 방법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투표 중단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선거 관련 사고에 대비하여 선거사고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과 조치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선거사고 대응체계의 구축·운영, 조치 사항 공표의 방법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